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오제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4.

발의자 : 오제세 · 이찬열 · 김두관
윤일규 · 심기준 · 전혜숙
기동민 · 권칠승 · 최도자
홍문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세부기준과 함께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·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하여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,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

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 제2항 후단).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(생 략)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 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 <u>이 경우 편의</u> <u>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</u> <u>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.</u>	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<u>이 경우 편의</u> <u>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</u> <u>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</u> <u>화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.</u>